

##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김유경 상무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

### 1.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주주들이 직접 경영자의 직무집행을 감독·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상법은 제3의 독립적 기구로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감사위원회나 감사(이하 ‘감사기구’)는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여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회계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감사기구의 역할이 논의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감사 등에 대한 엄중 제재방안’은 분식회계 근절의 근본적 책임자가 감사기구라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sup>1)</sup>.

이에 감사위원회(감사)의 위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과제와 해법에 대해 10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그 개관으로서 실효성 제고의 주요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2.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

감독 및 견제 기능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지려면, 감사기구가 감독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적 요령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감사위원회의 구성 측면에서 전문분야, 경력, 성별 측면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여러 분야의 경영현안에 대한 전문가적 안목을 제공하는 것도, 실효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 1) 독립성

감사위원 및 감사는 경영진을 감독할 권한이자 의무를 주주로부터 위임 받는데, 만약 이들이 감독 대상인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결국 적절한 문제제기 및 시정조치를 행할 수 없게 된다.

1) 분식회계 책임 있는 회계법인 대표 및 회사 감사 등도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2.2

감사위원 및 감사의 신분(선·해임, 재선임, 보직변경 등) 또는 금전적 보상이 경영진의 영향 하에 놓여있거나, 선임 전부터 혈연, 계열사 고용관계 등 연고가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성은 서두에 언급한 감사기구의 존재의의를 고려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자격요건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가장 선진화되었다는 도시바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불거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이슈’<sup>2)</sup>와 한국에서 CEO와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반대율이 낮다는 통계<sup>3)</sup>는 독립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2) 전문성 및 다양성

감사업무는 재무·회계 지식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경영환경을 둘러싼 거시적 직관, 해당산업 시장동향 등 다방면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 시, 회계 전문가 이외에 경영, 법률, IT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다양성 측면이 중시되는 것이다. 다수의 미국 기업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을 고려해 다양성을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감사위원들은 관료나 학계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더불어, 감사위원이나 감사가 선임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전문지식 개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회사의 시간적·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의 현안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의 중요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위원과 감사 개개인의 지식이나 역량 외에도 실무적 감독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감사보조기구의 설치와 통할 권한의 부여도 필수적 고려사항이다.

## 3) 윤리성

윤리성과 성실성은 감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무에 요구되는 기본자질이다. 그러나 위법·부정사안을 색출해 내야 하는 감사위원과 감사에게는 비단 실정법뿐 아니라 보편적 도덕과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더욱 중시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횡령·배임 등 부정 사안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각종 외부 리스크는 발생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전에 견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

## 3. 감사기구의 운영방안

위에서 언급한 감사위원이나 감사의 자격요건은 감사기구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며, 운영방안은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요령이다. 감사위원회 운영방안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1) 규정 제정 및 활동계획 수립

감사기구는 기구의 역할·권한·책임, 사외이사 비중, 위원장 선임, 회의소집, 결의사항, 감사록 작성, 회의록 보고 등에 관해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규정이나 감사 규정을 문서로 마련해야

2) 남의 일 아닌 도시바의 추락 “사흘 내 이익 내라” 상명하복 문화 폐단, 매경이코노미, 2015.8.3

3)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행태를 중심으로, KDI Focus, 2015.5.27

한다. 또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직전연도 말이나 사업연도 초에 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감사기구의 연간 활동시간, 업무별 시간배분, 안건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과 모범규준의 제·개정 등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 2) 회의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 안건에 대한 토의 및 검토를 위해 충분한 횟수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개최횟수를 정하거나, 회의가 개최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과 관련 정보를 위원에게 송부하는 등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감사위원회 회의에 대해 회의록이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하며, 회의 진행시간도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KOSPI200 기업의 평균 감사위원회 개최횟수는 5.4회이고, 평균 회의시간은 1시간<sup>4)</sup>이다. 반면, 해외 감사위원회의 횟수는 9회(오프라인 6회, 화상회의 3회)이고, 회의시간도 대부분 2시간에 4시간 정도<sup>5)</sup>라고 하니,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3) 회의 외 활동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감사기구의 자회사나 사업현장 방문 및 CFO, 애널리스트, 감독 기관 등과의 비공식적 만남과 같은 활동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재무제표 적정성 검토, 부정행위 적발 등 협의의 감사업무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문화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회의시간의 증가와 회의 이외 활동의 추가로 감사위원이나 감사가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4. 감사기구의 활동방안

상법에서 감사기구의 직무를 **회계감사와 업무감독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영역이나 방안을 명확하게 통일되게 제시하는 곳은 없는 듯하다. 따라서 주요국의 기업지배모범규준과 글로벌 선진 감사위원회의 실제 직무를 분석하여, 감사기구의 활동방안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표 1 | 감사기구의 활동방안(영역)

활동방안(영역)	설명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안건 검토</li> <li>• 경영진에게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li> <li>•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li> </ul>
재무정보 및 재무보고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활동의 건전성·재무정보의 진실성·재무보고 절차의 적절성 검토</li> <li>• CFO 평가 및 승계계획 마련</li> </ul>
외부감사인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 선임 및 업무 평가</li> </ul>

4) KOSPI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관련 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4

5) 2015 Global Audit Committee Survey, KPMG ACI, 2016

감독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li> <li>• 외부감사인과의 계약기간,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외부감사 투입인력의 수, 외부감사인 평가결과 등 외부감사인 관련 상세정보 공시</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시 감독</li> </ul>
내부통제 및 부정 위험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평가 및 개선</li> <li>•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과의 커뮤니케이션</li> <li>• 발생가능한 부정위험 목록 작성, 진단 및 보고</li> <li>• 부정 적발 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 조치</li> <li>•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li> <li>• 임직원 윤리교육</li> </ul>
리스크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리스크 감독</li> <li>• 기타 경영 리스크* 감독</li> <li><small>* 고객정보 유출, 세계경기 둔화, 신기술 등장 등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small></li> <li>•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의 연계</li> </ul>
감사보조기구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보조기구 설치 및 운영 (연간감사계획의 승인 등)</li> <li>• 감사보조기구의 장 선임과 성과평가 등</li> </ul>
대외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및 성과평가 등 감사위원회 관련 상세정보 공시</li> <li>• 주주, 직원, 공급업체, 지역주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기적 커뮤니케이션</li> </ul>


## 5. 우리의 과제

우리나라의 감사기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독의 직무를 법에 의해 부여 받았다. 이는 회계투명성 기반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요구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기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그 위상이 낮으며, 그나마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위상과 실효성 제고는 독립성, 전문성 확보라는 법·제도적 측면과 함께 감사기구의 실질적 활동을 위한 투입시간의 확대와 정보의 제공, 감사기구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의 설치 및 활동영역의 확대라는 운영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과제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62년에 미국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에도 선진모형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비 노력을 지속해 왔다. 더욱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은 우리나라 기업소유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지 않았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감사기구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감사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사회적 풍토가 존재한다. 이를 직시하고 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이슈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과 지배주주가 감사기구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6)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20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및 시행령(2016) 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2014) 입법화 논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개정 (2016) 및 Stewardship Code 제정 (2016) 논의 등

향후에는 감사기구 자체의 과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독특한 기업소유구조에 기인한 과제를 포함하여, 그 현상을 직시할 수 있는 통계 등의 실상과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KPMG ACI 소개	향후 기고 계획
<p>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재무보고 감독, 감사품질 확보, 리스크 관리, 국내외 규제 준수 등 감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감사위원회 및 감사에게 제공하고, 감사위원·감사·사외이사·기타 이사회 멤버 간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활동 및 간행물 발행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ACI Korea는 2015년 4월부터 발족되었으나 Global KPMG ACI의 역사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Global KPMG ACI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전세계 40여개국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p>본고는 향후 ACI가 기고할 원고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차후 원고들은 각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풍부한 사례를 포함해 작성될 예정입니다. KPMG ACI가 「Auditor Journal」에 기고할 총 10편의 원고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p>
<p>그림 1   Global KPMG ACI 네트워크</p>	<p>표 2   ACI 기고 계획  <b>“올바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li> <li>2.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 개관 및 전문성</li> <li>3.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 독립성</li> <li>4.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재무활동 감독 및 외부감사인 감독</li> <li>5.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내부통제 및 부정위험 감독</li> <li>6.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리스크 감독</li> <li>7.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내부감사 감독</li> <li>8.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대외 커뮤니케이션</li> <li>9.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및 연간 활동계획 수립</li> <li>10. 감사위원회 운영 회의 및 그 외 활동</li> </ol>